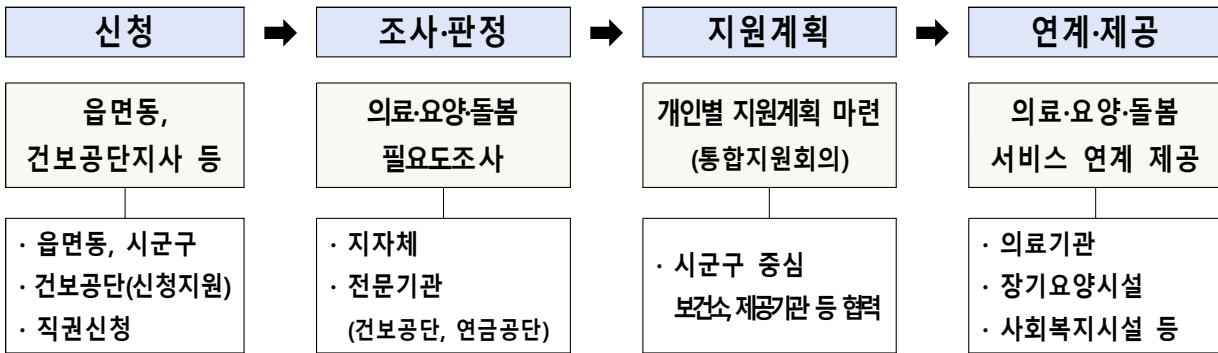


## 의료·요양·통합돌봄 제도 개요

◆ '26.3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전면 시행  
 □ “수요자 중심의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 서비스” 전국 적용

- (목적)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 위해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서비스 제공
- (대상자) 노쇠·장애·질병·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, 장애인 등\*  
 \* 노인·장애인이 아니어도,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대상자에 포함
- (지원내용) 보건의료, 건강관리, 방문요양, 일상돌봄 등 지원
- (절차) 신청→조사·판정→지원계획 수립→서비스 제공→모니터링



- ① (신청) 읍면동·건보공단 등 통해, 본인·가족 + (시장·군수·구청장)직권 신청
- ② (조사·판정) 통합판정조사 통해 필요도 조사(건보공단 수행, 지자체 동행), 퇴원환자 등 긴급사례나 지역돌봄 중심사례는 지자체 직접 조사
- ③ (계획) 개인별지원계획을 승인·조정하는 통합지원회의\*(시군구 총괄) 운영  
 \* 시군구, 읍면동, 보건소, 건보공단, 서비스 제공기관(재택의료센터, 복지관 등) 참여
- ④ (서비스 연계) 통합지원회의에서 수립된 서비스지원계획에 맞춰, 의료·요양·돌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
- ⑤ (모니터링) 일정 주기(3개월)로 적절한 의료·요양·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및 대상자 상태변화 체크, 필요시 지원계획 변경

※ (종결) 사망·입원·욕구충족완료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통합지원 종결